#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42

발의연월일: 2024. 9. 6.

발 의 자:윤준병·임호선·박희승

이병진 · 서영교 · 이춘석

김윤덕 · 허종식 · 한병도

정동영 • 이정헌 • 이상식

한창민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적발되면 향후 청구되는 의료급여비용에 지급보류 처분을 하여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 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급보류는 잠정적 처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잠정적인 지급보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율이 존재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불송치, 불기소, 무죄판결의 확정 등으로 불법개설기관이 아님을 확인받게 되는 경우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제도에 대한 입법적 규율이 없고, 지급보류 처분이후 불법개설 기관이 아니라고 밝혀질 경우지급보류기간 동안 발생한 제한상황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급해야 할 적절하고 상당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한 규율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는 법조항의 일

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하급심의 무죄 판결 및 법원 무죄 확정 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처분에 대한 법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법률 제 호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운영된 혐의에 대 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의료 급여에 한정하여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하는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5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지급 보류된"을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 보류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이 경우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1조의5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절차와 이자의 산정"을 "절차"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죄판결 선고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이 법 시행일까지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정 혂 행 개 아 제11조의5(급여비용의 지급 제11조의5(급여비용의 지급 보 보 류) ①・② (생 략) 류)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 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운영 된 혐의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 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 고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에 한 정하여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하는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 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로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 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 지급 보류된-----산하여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 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이 경우 이자는 「민법」 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보류 절차 및 의견제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 른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 및 이 자의 지급 절차와 이자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다.
<u> </u>
<u>제4항에</u>
<u>절차</u>
<u>.</u>